

(별표 2)

자동차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 및 유해물질검사 시험방법(제10조 1항 관련)

1.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시험방법

가. 휘발유용 : 별표 1 제1호의 시험방법과 같다.

나. 경유용 : 별표 1 제2호의 시험방법과 같다.

다. LPG용 : 별표 1 제3호의 시험방법과 같다.

2. 카드뮴, 구리, 니켈, 크롬, 철, 망간, 아연, 알루미늄의 농도측정 방법

항목	시험방법
카드뮴(Cd)	미국재료시험협회시험방법인 ASTM D7111*, 폐기물공정 시험기준 ES 06150.d, ES 06400.1, ES 06400.2에 의한다.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7111 시험법에 의한다. * 카드뮴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내 파장으로 분석한다.
구리(Cu)	
니켈(Ni)	
크롬(Cr)	
철(Fe)	
망간(Mn)	
아연(Zn)	
알루미늄(Al)	

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농도계산은 다음과 같다.

$$\text{시료 중 금속의 농도}(mg/L) = \frac{(C_1 - C_0)}{V_0} \times V_s \quad (\text{식 1})$$

여기서, C_1 : 검정곡선에서 얻어진 분석시료의 금속 농도(mg/L)

C_0 : 검정곡선에서 얻어진 바탕시험용액의 금속 농도(mg/L)

V_0 : 전처리에 사용된 시료량(mL)

V_s : 전처리 후 표선 맞춘 시료량(mL)